

2023

# 자율운항선박 지침

한 국 선 급

## "자율운항선박 지침"의 적용

- 1. 이 지침은 별도로 명시하는 것을 제외하고 2023년 7월 1일 이후 건조계약 또는 검사신청 되는 자율운항선박에 적용한다.
- 2. 2022년판 지침에 대한 개정사항 및 그 적용일자는 아래와 같다.

## 적용일자 : 2023년 7월 1일

제 1 장 일반사항

제 1 절 일반사항

- 103.의 7항을 개정함.
- 108.을 개정함.

제 2 장 자율화시스템 및 자율운항선박

제 3 절 자율운항선박 승인 절차

- 301.의 그림 2.8을 개정함.
- 301.의 3항을 개정함.
- 301.의 4항 (3)호 (다)를 개정함.

# 차 례

제	1 장 역	일반사항 1
	제 1 절	일반사항1
	제 2 절	운용계획서
	제 3 절	사이버보안5
제	2 장 겨	사율화시스템 및 자율운항선박7
	제 1 절	자율화시스템의 구성 및 기능7
	제 2 절	자율화시스템 및 자율운항선박의 요건14
	제 3 절	자율운항선박 승인 절차
제	3 장 유	P험도기반 승인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
	제 1 절	일반사항21
	제 2 절	위험도기반 설계 승인 시 고려사항 22
	제 3 절	위험 저감을 위한 대책 25

1장 일반사항 1 장

## 제 1 장 일반사항

#### 제 1 절 일반사항

#### 101. 배경

- 1. 다양한 디지털 기술과 자동화 기술의 발달로 인해, 주변 상황을 스스로 인식하고 자율적으로 운항할 수 있는 자율운 항 관련 기술인 자동 항해,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로직 시스템, 통합 센서 시스템 및 데이터 통신 기능 등에 대 한 연구 개발이 전 세계적으로 수행되고 있다.
- 2. 현재의 해운 산업 및 관련 정보·통신 기술개발 현황 등을 고려할 때, 자율운항은 해운 산업 분야의 안전성 및 신뢰성 을 향상시키고 선박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운용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.
- 3. 정보·통신 기술발전에 따라 해운 산업은 점점 더 디지털화 및 자동화되고 있지만, 이로 인해 새로운 위험 요소가 등장 하고 그러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식별하여 예방하거나 완화시켜줄 필요성도 식별되고 있다.

#### 102. 목적

1. 이 지침은 자율운항선박 또는 자율운항에 필요한 시스템 및 기능에 대한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. (2021)

#### 103. 적용

- 1. 이 지침은 해상에서 선박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시스템의 설계 또는 운영에 대한 주요 권고안을 제
- 2. 이 지침은 수면상의 자율운항선박에 적용되며 무인잠수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.
- 3. 이 지침에서 제시하는 자율화시스템의 구성은 운영목적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.
- 4. 이 지침을 적용함에 있어서, 자율수준과는 상관없이 해당 선박에 적용할 수 있는 모든 국제협약, 기국법 및 기항지의 국내법 등을 만족함을 기본으로 한다.
- 5.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선급 및 강선규칙의 각 해당 요건에 따른다.
- 6. 이 지침을 적용하는 자율운항선박은 우리 선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율운항선박 또는 시스템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수행하거나 신뢰성을 검토할 수 있다. (2021)
- 7. 이 지침을 적용하는 자율운항선박은 해당 선박에 적합한 사이버보안 인증을 받아야 하며 자율운항선박의 운영을 목적 으로 추가로 설치되는 장비 및 시스템은 제조법 및 형식승인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. (2023)
- 8. 이 지침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선급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라 ISO, IEC, KS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인정된 기준에 따를 수 있다.

#### 104. 용어의 정의

용어의 정의는 여기에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급 및 강선규칙에 따른다.

- 1. 자율운항선박(Autonomous Ships)이라 함은 자율화시스템을 통해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선박의 제어 및 관리의 전체 또는 일부를 자율화시스템이 대신할 수 있는 선박을 말한다. 자율운항선박은 유인, 무인 또는 원격으로 운항될 수 있 다. (2021)
- 2. 운영자(Operator)라 함은 선내 또는 선외에서 선박의 제어 및 관리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.
- 3.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시스템(Data Acquisition and Analysis Systems)이라 함은 해상 물체/선박 및 해상 환경과 관련 된 선박의 외부상황과 선박 운항/운동과 관련된 내부상황을 인식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.
- 4. 자율운항시스템(Autonomous Navigation Systems)이라 함은 내/외부 상황을 고려하여 경제적인 운항 및 충돌/좌초 방 지를 위한 경로계획과 조타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경로계획 및 조타계획에 따라 선박의 추진장치 및 조타장치 등을 제어하는 시스템을 말한다.
- 5. 통신시스템(Communication Systems)이라 함은 정보 객체들 간의 통신에 관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.
- 6. 선외지원시스템(Outboard Support Systems)이라 함은 자율운항 선박의 운항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시스템을 말한다.
- 7. **의사결정 지원 시스템(Decision-making Support Systems)**이라 함은 선내 운영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

1장 일반사항 1장

- 을 말하며, 이러한 시스템은 여러 시스템의 조합으로 구성할 수 있다. (2021)
- 8. **사이버보안**(Cybersecurity)이라 함은 조직의 자산과 그에 포함된 정보의 기밀성, 무결성,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 또는 프로세스, 역량 등을 말한다.
- 9. 기밀성(Confidentiality)이라 함은 자산이 인가된 당사자에 의해서만 접근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.
- 10. **무결성**(Integrity)이라 함은 자산이 인가된 당사자에 의해서 인가된 방법으로만 변경 가능한 것을 말한다. 이는 자산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.
- 11. 가용성(Availability)이라 함은 자산이 적절한 시간에 인가된 당사자에게 접근 가능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.

#### 105. 자율수준(Level of Autonomy) (2021)

- 1. 자율수준은 다음과 같은 기능에 대하여 시스템 또는 선외로부터의 원격운영이 선내운영자를 대체하는 정도에 따라 자율수준이 정해진다. **표 1**은 이러한 기능별 자율수준을 나타내었다.
- (1) 데이터 수집/분석
- (2) 의사 결정
- (3) 실행

#### 표 1 자율 수준

자율 수준	데이터 수집/분석 (Data acquisition/analysis)	의사 결정 (Decision-making)	실행 (Action)	
AL 1	시스템 및/또는 운영자	운영자	운영자	
AL 2	시스템/원격	운영자(시스템/원격) <sup>(1)</sup>	운영자	
AL 3	시스템/원격	시스템/원격(운영자) <sup>(2)</sup>	시스템/원격	
AL 4	시스템	시스템 <sup>(3)</sup>	시스템 <sup>(3)</sup>	
AL 5	시스템	시스템	시스템	

#### (비고)

- (1) 시스템 또는 워격운영을 통해 운영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지만 최종 결정은 선내 운영자가 한다. (2021)
- (2) 의사 결정에 대한 운영자의 확인이 필요하다.
- (3) 의사 결정 및 실행에 대하여 운영자가 항시 모니터링 한다.
- 2. 각 자율수준은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.
- (1) AL 1: 데이터 수집/분석은 운영자 및 시스템에 의해서 수행될 수 있지만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의사 결정 및 그 실행은 운영자가 수행한다.
- (2) AL 2: 시스템 또는 선외의 원격운영을 통해서 데이터가 수집/분석되고 그에 따른 의사 결정 및 실행은 운영자가 수행한다. 시스템은 운영자의 의사 결정에 대하여 운영자를 지원한다. 시스템 또는 선외로부터의 원격운영을 통해서 운영자의 의사 결정을 지원한다.
- (3) AL 3: 시스템 또는 선외의 원격운영을 통해서 데이터가 수집/분석되고 그에 따른 의사 결정 및 실행도 시스템 또는 원격운영에 의해 수행된다. 단, 시스템에 의한 의사 결정에 대한 운영자의 확인이 반드시 요구되며, 운영자 확인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해당 의사결정 사항을 철회한다. 시스템 고장 시 또는 원격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유영자의 대응이 필요하다.
- (4) AL 4: 시스템의 의해서 데이터가 수집/분석되고 그에 따른 의사 결정 및 실행도 시스템에 의해 수행된다. 시스템 에 의한 의사 결정 및 그 실행에 대한 정보를 운영자가 항시 모니터링 한다. 비정상 운용 시나리오(시스템 고장 등)에 대하여 시스템의 대응이 가능하다.
- (5) AL 5: 완전한 자율수준으로서 데이터 수집/분석, 의사 결정 및 실행 등 모든 기능이 시스템에 의해 수행되며 운영 자는 비상상황을 모니터링 한다. 비정상 운용 시나리오(시스템 고장 등)에 대하여 시스템의 대응이 가능하다.

1장 일반사항 1장

#### 106. 선급부호

1. 이 지침을 자율운항선박에 적용하고자 하는 범위 및 자율수준은 기본적으로 선주의 요청에 의해 진행되지만 위험도 평가를 통해 결정될 수 있다. (2021)

- 2. 이 지침을 적용하는 자율운항선박에는 2장 103.의 1항부터 5항에서 규정하는 자율화시스템의 적용여부에 따라 105.의 자율수준별 부기부호가 부여될 수 있다. 예를 들어, 2장 103.의 1항에서 규정하는 자율화시스템을 갖춘 선박에는 "AL 1"이 부여될 수 있다.
- 3. 2항에도 불구하고, 선주, 조선소 등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, 특정 개별시스템에 대하여 적절한 수준의 AL 부기부 호를 부여하고 특기사항을 명시할 수 있다. 예: AL level (special feature) (2021)

#### 107. 동등효력

이 지침에 만족하지 않거나 적용할 수 없는 대체설계 및 신기술의 동등효력에 대해서는 **선급 및 강선규칙 1편 1장 104**.를 따른다. *(2020)* 

#### 108. 규정의 증감

자율운항선박 관련 기술은 개발 중에 있는 사항이므로 상황별로 추가적인 고려사항 및 요건이 발생할 수 있으며, 이 지침의 요건에 따르지 않는 설계가 동등한 수준의 안전을 보장할 경우 우리 선급에 의해 평가 후 승인될 수 있다. 또한, 항로 또는 용도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선박에 대하여는 우리 선급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범위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. (2023)

1장 일반사항 1장

## 제 2 절 운용계획서

#### 201. 일반사항

- 1. 개발자는 해당 선박에 대한 운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2. 운용계획서는 선주의 자율운항선박 운용 의도와 그에 대한 운용 요건을 문서화한 것으로서 해당 자율운항선박의 목 적과 기능에 따라 최소한 다음 정보를 명시하여야 한다.
- (1) 운용 정보
  - (가) 운용 목적
  - (나) 운용 범위: 운항 해역, 해상 조건, 기타 본선 및 본선에 탑재된 시스템의 안전 운용을 위해 요구되는 조건(예: 통신시스템의 경우 통신 네트워크 성능 요건, 데이터 품질 요건 등)
- (2) 시스템 정보
  - (가) 자율수준
  - (나) 모듈화 및 구성 상세
- (3) 위험 정보
  - (가) 운용 시나리오(정상/비정상)
  - (나) 위험요소 및 완화방안
- 3. 운용계획서에는 해당 시스템 또는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보장할 수 있는 운용 범위가 명시되어야 한다.
- 4. 해당 시스템 또는 선박은 해당 운용 범위 내에서만 운용되어야 한다. 선박에는 명시된 모든 운용 범위에 대한 이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내용은 운용 시 항상 기록되어야 한다. 기록 내용은 언제 든지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기록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명시된 운용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간주한다.
- 5. 운용계획서에는 운용 시나리오 상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와 그에 대한 완화방안이 명시되어야 한다. 해당 시스템 또는 선박이 명시된 운용 범위 내에서 운용되었을 경우라도 운용계획서 상 제시되지 않은 위험요소로 인해 선박 안전에 해를 끼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책임은 운용 환경 내에서 예상되는 위험상황을 검토하지 않고 그에 대한 완화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개발자에게 있다.

1장 일반사항 1 장

## 제 3 절 사이버보안

#### 301. 일반사항

1. 정보·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자동화기술의 발전 및 자율운항 기술의 개발에 따라 네트워크상의 사이버위험도가 점 점 더 증가되고 있다. 특히 자율운항선박의 경우에는 그러한 위험도는 더 증가된다.

- 2. 자율운항을 위한 시스템 및 선박은 이러한 사이버위협을 사전에 예방 및 탐지하고 사이버공격에 대응하는 사이버보 안 기술이 필수로 요구된다. 따라서 자율운항선박의 선내 시스템은 그 시스템의 가용성, 기밀성 및 무결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에 대한 인증을 받고 유지하여야 한다.
- 3. 사이버보안 관련 규정은 해상 사이버보안 시스템 지침의 각 해당 요건에 따른다. 해상 사이버보안 시스템 지침의 규 정 이외에 IMO 등 국제 규정에 따른 별도 요건이 있거나 정보기술 및 운영기술의 발전에 따라 우리 선급이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적인 고려사항 및 요건이 요구될 수 있다.

#### 302. 적용 (2021)

- 1. 본선과 선외지원시스템 간 통신 네트워크가 구축된 경우 비인가자 공격 및 데이터 접근으로부터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다.
- 2. 본선시스템 설계, 제작, 설치 중 비인가자 공격 및 데이터 접근에 대한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사이버 보안 통제 시 스템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.
- 3. 시스템 보안 성능은 정상 및 비정상 운용 시나리오를 모두 고려하여야 하며 시스템 보안의 실패가 안전 기능에 미치 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.
- 4. 적용되는 시스템 보안 절차는 시스템의 설계, 조달, 제작, 설치 및 시운전 중 야기될 수 있는 사이버 보안 관련 위험 을 완화하여야 하며 최소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- (1) 위험 관리
- (2) 접근통제
- (3) 물리적 보안
- (4) 사고대응 및 복구
- (5) 외부자 보안
- (6) 데이터 보안
- (7) 로그 관리
- (8) 소프트웨어 개발 및 테스트
- (9) 시스템 관리
- (10) 패치 관리
- (11) 암호화
- (12) 악성코드 대응
- (13) 네트워크 관리 ↓

2장 선급검사 2 장

## 제 2 장 자율화시스템 및 자율운항선박

## 제 1 절 자율화시스템의 구성 및 기능

#### 101. 자율화시스템의 구성

1. 이 지침에서 제시하는 자율화시스템의 구성은 그림 2.1과 같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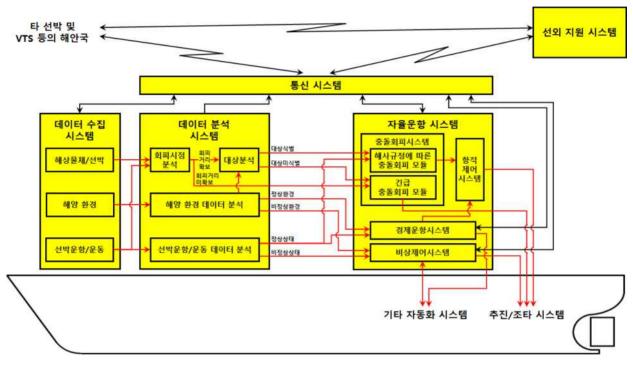


그림 2.1 자율화시스템의 일반적인 구성

#### 102. 자율화시스템의 기능

#### 1.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시스템

- (1) 해상 물체/선박 및 해상 환경과 관련된 선박의 외부상황과 선박 운항/운동과 관련된 내부상황을 인식하기 위한 시 스템으로서 다수의 데이터원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통합/분석하여 운항 관련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결과를 운영자 또는 자율운항시스템에 제공한다. 본 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 는다. (2021)
  - (가) 해상 물체/선박 감지 센서 모듈을 통해 수집된 외부 상황 데이터를 통합/분석하여 회피시점을 확인하고 해상 물체 또는 선박을 구체적으로 식별한 후, 대상 식별 결과를 자율운항시스템으로 전달하며 대상이 식별되지 않 은 경우 운영자에게 경고 알림 및 관련 정보 전달
  - (나) 선박의 위치, 선수방향, 속도, 관성 등 선박의 운항 및 운동 정보를 측정하여 본선의 운항/운동 상태를 분석하 고 정리된 정보를 자율운항시스템으로 전달(경제운항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경우 자율운항시스템 및 경제운항시 스템에 해당 정보 전달)
  - (다) 해양 환경 감지 센서 모듈을 통해 수집된 해양 환경(기상, 파고 등) 데이터를 통합/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경제 운항시스템으로 전달
- (2)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시스템의 하위시스템은 다음과 같다.
  - (가) 해상 물체/선박 감지 센서 모듈 (ARPA, Radar, Lidar, Daylight 카메라, 적외선 카메라 등)
  - (나) 해양 환경 감지 센서 모듈 (기상관측 센서, 파고 관측 센서, 음향 측심장치 등)
  - (다) 위치 및 항해 센서 (GNSS. 자이로 컴퍼스 등)
  - (라) 회피시점 분석 모듈
  - (마) 회피대상 식별 모듈

- (바) 해양 환경 데이터 통합/분석 모듈
- (사) 선박 운항/운동 데이터 통합/분석 모듈

#### 2. 자율운항시스템

- (1) 내/외부 상황을 고려하여 경제적인 운항 및 충돌/좌초 방지를 위한 경로계획과 조타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경로 계획 및 조타계획에 따라 선박의 추진장치 및 조타장치 등을 제어하는 시스템으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.
  - (가)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시스템을 통해 분석된 결과(회피시점, 회피대상, 본선의 운항/운동 상태)를 바탕으로 해사 규정에 따른 충돌 회피 경로 수립
  - (나) 사전 정의된 항해 계획을 관리하고 필요시 이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
  - (다) 교통 조건(경제운항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경우 교통 및 해양 환경 조건)을 고려하여 사전 정의된 항해 계획을 따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항할 수 있도록 추진/조타 시스템 제어
  - (라) 데이터 분석 시스템에서 회피 대상이 식별되지 않아 운영자에게 경고 알림 및 관련 정보 전달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해사 규정에 따른 충돌 회피 한계점에 이르도록 운영자 응답이 없을 경우 본선의 운용 범위 내에서 위험 상황 회피
  - (마) 긴급한 위험상황(근거리 충돌물체 식별 등) 발생 시 본선의 운용 범위 내에서 위험상황 회피
  - (바) 해양 환경과 본선의 운항 및 운동 상태를 고려하여 경제운항을 위한 최적의 경로 수립
  - (사) 운항과 관련된 비정상상태 감지 시 미리 정의된 절차에 따라 선박 제어
- (2) 자율운항시스템의 하위시스템은 다음과 같다.
  - (가) 충돌회피시스템
  - (나) 항적제어시스템
  - (다) 경제운항시스템
  - (라) 비상제어시스템

#### 3. 통신시스템

- (1) 정보 객체들 간의 통신에 관여하는 시스템으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.
  - (가) 본선과 다른 선박 간의 데이터 전달 및 공유
  - (나) 본선과 VTS 등 해안국 간의 데이터 전달 및 공유
  - (다) 본선과 선외 지원 시스템 간의 데이터 전달 및 공유
  - (라) 그 외 조난 통신
- (2) 통신시스템의 하위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구성될 수 있다.
  - (가) LOS(line of sight) 통신시스템
  - (나) 무선통신시스템 (VHF, UHF)
  - (다) 위성통신시스템
  - (라) 근거리 무선통신시스템 (W-LAN)

#### 4. 선외 지원 시스템

- (1) 자율운항선박의 운항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시스템으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.
  - (가) 항해 계획 수립
  - (나) 자율화시스템 및 운항 정보 모니터링
  - (다) 자율운항선박 직접 제어(필요시)
- (2) 선외 지원 시스템의 하위시스템은 다음과 같다.
  - (가) 임무 통제 컴퓨터
  - (나) 운용 제어반
  - (다) 인터페이스 시스템

#### 103. 자율수준에 따른 시스템 구성

자율운항선박의 자율 수준에 따라 요구되는 자율화시스템은 다음과 같다.

#### 1. 자율수준 1(AL 1)

- (1) 자율수준 정의
  - (가) 데이터 수집 및 분석: 시스템 및 운영자
  - (나) 의사결정: 운영자
  - (다) 실행: 운영자
- (2) 선박 특성: 다수의 데이터원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통합/분석하는 시스템을 갖춘 선박
- (3) 시스템 구성
  - (가)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시스템: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시스템 (102. 1항 (1)호 (가)부터 (다) 중 하나 이상의 기능을 갖춘 시스템)
  - (나) 운용 특성에 따라 요구될 수 있는 시스템
    - (a) 통신시스템
    - (b) 선외 지원 시스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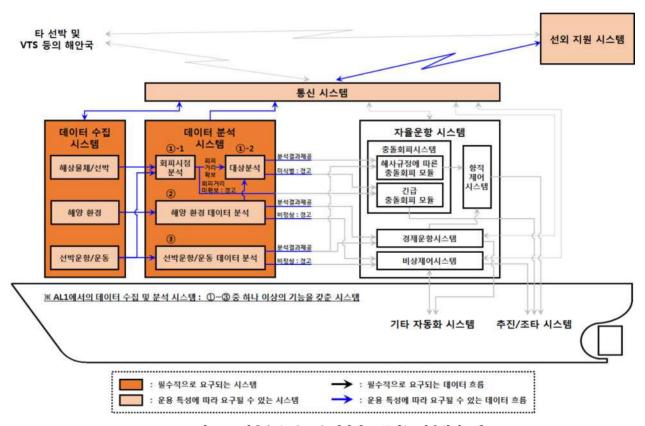


그림 2.2 자율수준 1(AL 1) 선박에 요구되는 자율화시스템

#### 2. 자율수준 2(AL 2)

- (1) 자율수준 정의
  - (가) 데이터 수집 및 분석: 시스템
  - (나) 의사결정: 운영자(시스템 지원)
  - (다) 실행: 운영자
- (2) 선박 특성: 정상 운용 시나리오 내에서 운항에 대한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춘 선박
- (3) 시스템 구성
  - (가)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시스템
    - (a)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시스템(자율운항시스템 기능을 지원하는 시스템)
    - (b)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(2021)
  - (나) 운용 특성에 따라 요구될 수 있는 시스템
    - (a) 통신시스템
    - (b) 선외 지원 시스템
    - (c) 자율운항시스템 (2021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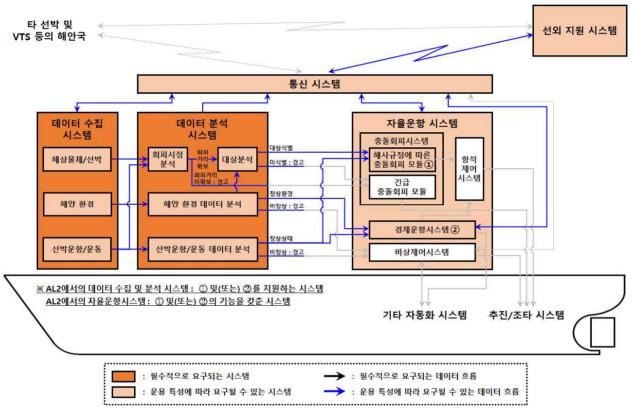


그림 2.3 자율수준 2(AL 2) 선박에 요구되는 자율화시스템

#### 3. 자율수준 3(AL 3)

- (1) 자율수준 정의
  - (가) 데이터 수집 및 분석: 시스템
  - (나) 의사결정: 시스템(정상 운용 시나리오에 한함 / 운영자 확인이 요구됨)
  - (다) 실행: 시스템(정상 운용 시나리오에 한함)
- (2) 선박 특성: 정상 운용 시나리오 내에서 자율 운항이 가능한 선박 (단, 의사 결정 사항에 대한 운영자 확인이 반드 시 요구되며, 운영자 확인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해당 의사 결정 사항 철회)
- (3) 시스템 구성
  - (가)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시스템
    - (a) 데이터 수집 시스템
      - (i) 해상 물체/선박 감지 센서 모듈
      - (ii) 위치 및 항해 센서
    - (b) 데이터 분석 시스템
      - (i) 회피시점 분석 모듈
      - (ii) 회피대상 식별 모듈
      - (iii) 선박 운항/운동 데이터 통합/분석 모듈
    - (c) 자율운항시스템
      - (i) 해사 규정에 따른 충돌회피 모듈
      - (ii) 항적제어시스템
  - (나) 운용 특성에 따라 요구될 수 있는 시스템
    - (a) 통신시스템
    - (b) 선외 지원 시스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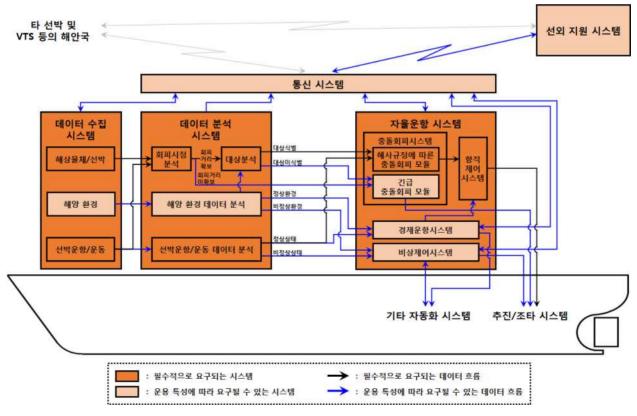


그림 2.4 자율수준 3(AL 3) 선박에 요구되는 자율화시스템

2장 선급검사 2 장

#### 4. 자율수준 4(AL 4)

- (1) 자율수준 정의
  - (가) 데이터 수집 및 분석: 시스템
  - (나) 의사결정: 시스템(운영자 모니터링)
  - (다) 실행: 시스템(운영자 모니터링)
- (2) 선박 특성: 운영자 모니터링 조건 하에 자율 운항이 가능한 선박 (비정상 운용 시나리오(시스템 고장 등)에 대하여 시스템 차원의 대응(예: 시스템 이중화 등) 가능: 자율 수준 상, 승선 인원은 불필요하나 모든 의사결정 및 실행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원격 제어를 지원할 수 있는 적절한 통신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 모니터 링/제어를 위한 최소 인원이 탑승할 수 있음)
- (3) 시스템 구성
  - (가)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시스템
    - (a) 데이터 수집 시스템
      - (i) 해상 물체/선박 감지 센서 모듈 (ii) 해양 환경 감지 센서 모듈
      - (iii) 위치 및 항해 센서
    - (b) 데이터 분석 시스템
      - (i) 회피시점 분석 모듈
      - (iii) 해양 환경 데이터 통합/분석 모듈
    - (c) 자율운항시스템
      - (i) 해사 규정에 따른 충돌회피 모듈
      - (iii) 항적제어시스템
      - (v) 비상제어시스템
  - (나) 운용 특성에 따라 요구될 수 있는 시스템
    - (a) 통신시스템
    - (b) 선외 지원 시스템

- (ii) 회피대상 식별 모듈
- (iv) 선박 운항/운동 데이터 통합/분석 모듈
- (ii) 긴급 충돌회피 모듈
- (iv) 경제운항시스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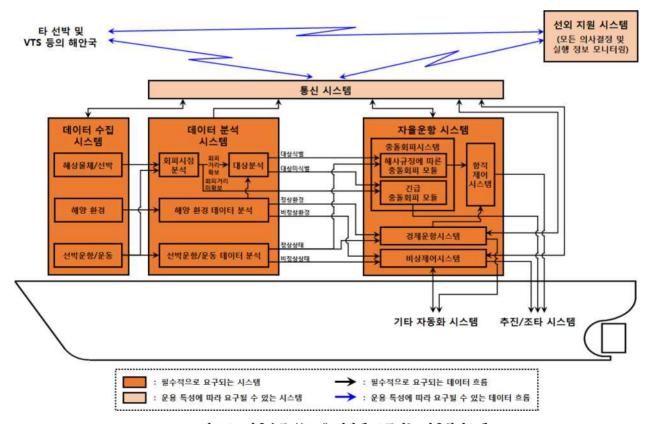


그림 2.5 자율수준 4(AL 4) 선박에 요구되는 자율화시스템

2장 선급검사 2 장

#### 5. 자율수준 5(AL 5)

- (1) 자율수준 정의
  - (가) 데이터 수집 및 분석: 시스템
  - (나) 의사결정: 시스템
  - (다) 실행: 시스템
- (2) 선박 특성: 무인 자율 운항이 가능한 선박 (선외지원시스템 내 운영자는 비상상황 모니터링)
- (3) 시스템 구성
  - (가)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시스템
    - (a) 데이터 수집 시스템
      - (i) 해상 물체/선박 감지 센서 모듈
- (ii) 해양 환경 감지 센서 모듈
- (iii) 위치 및 항해 센서
- (b) 데이터 분석 시스템
  - (i) 회피시점 분석 모듈
  - (iii) 해양 환경 데이터 통합/분석 모듈
- - (iv) 선박 운항/운동 데이터 통합/분석 모듈

- (c) 자율운항시스템
  - (i) 해사 규정에 따른 충돌회피 모듈
  - (iii) 항적제어시스템
  - (v) 비상제어시스템
- (d) 통신시스템
- (e) 선외 지원 시스템

(ii) 긴급 충돌회피 모듈

(ii) 회피대상 식별 모듈

(iv) 경제운항시스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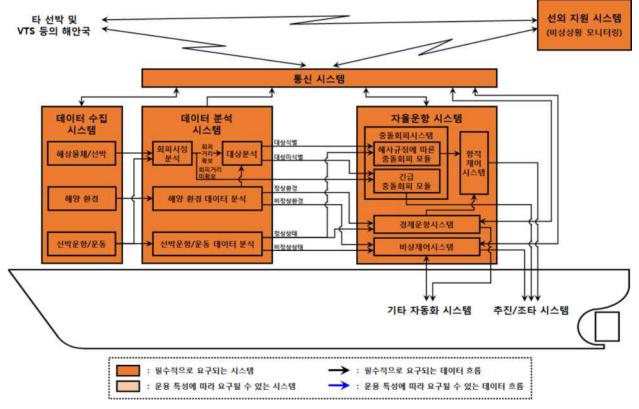


그림 2.6 자율수준 5(AL 5) 선박에 요구되는 자율화시스템

#### 제 2 절 자율화시스템 및 자율운항선박의 요건

#### 201. 자율운항선박의 기본 요건

- 1. 자율운항선박은 사전에 명시된 안전 운용 범위 내에서 운용되어야 하며, 해당 범위 내에서 시스템 신뢰성 및 안전성 이 확보되어야 한다.
- (1) 자율화시스템은 안전한 운용을 위해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모든 안전상의 위험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.
- (2) 주요 결함 또는 안전 관련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, 단일 고장에 대한 영향이 제거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.
- 2. 자율운항선박 운용 절차와 관련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적절한 검토와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한다.
- (1) 운영자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부여해야 한다.
- (2) 내부 또는 외부인원에 대하여 자율운항선박의 제어권을 이전할 경우, 사전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관련 책임을 명확히 할당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.
- 3. 자율운항선박에는 선박의 내·외부 상황에 대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항해자료기록기(VDR)가 설치되어야 한다.
- (1) 저장 데이터에는 다음의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.
  - (가) 내부 시스템 상태 감시(결함 표시, 하위 시스템 운용 상태 등)
  - (나) 외부 시스템과의 데이터 통신
  - (다) 상황 인식 센서 데이터(레이더, 관측용 카메라 데이터 등)
  - (라) 의사 결정 사항(회피 동작, 속도 변경 등)
  - (마) 수행된 기능(활성화된 시스템, 활성화된 경고 신호 등)
- (2) 메모리를 절약하기 위해 항해자료기록기(VDR)의 데이터 저장은 오래된 파일을 순차적으로 삭제하면서 최근의 데이터를 저장해나가는 순환식으로 조정될 수 있다. 순환식 저장 방식을 사용할 경우 해당 항해자료기록기(VDR)는 오래된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삭제할지라도 운용 후 분석에 문제가 없을 만큼 충분한 시간의 데이터 기록을 저장할수 있어야 하며, 사고 데이터는 삭제되지 않아야 한다.
- 4. 사람이 승선 가능한 선박에 대하여는 관련된 모든 코드 및 협약이 준수되어야 한다.
- 5. IMO 또는 현지 법규에 의해 채택된 국제 협약의 모든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 필요한 경우 면제 또는 동등한 해결책을 주관청이 명시적으로 승인하여야 한다.

#### 202. 자율화시스템의 기본 요건

각 자율화시스템은 102.에 기술된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며, 해당 기능 수행 시 다음의 기본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.

#### 1.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시스템

- (1) 자율운항선박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충돌 및 환경과 관련된 외부 상황과 선박의 운항 및 운동과 관련된 내부 상황을 적절히 인지하여야 하며, 분석된 결과는 안전히 처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자율운항시스템 또는 운 영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.
  - (가) 선박의 상태/상황 인지에 대한 정확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정보의 과부하를 피하기 위해 센서로부터 수집된 데 이터는 적절히 융합/분석되어 운영자에게 제안되어야 한다.
  - (나) 데이터 저장은 수집된 데이터양에 적합해야 한다. 용량 초과 시 불필요하거나 오래된 데이터를 삭제하고 정상상 태로 복구하기 위한 절차가 제공되어야 한다.
- (2) 해상 물체/선박 감지 센서 모듈은 장애물을 식별하고 이동 물체 또는 고정 물체를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.
  - (가) 센서 모듈은 자율운항선박의 임무 및 운용 범위 등에 따라 다양한 센서가 복합된 형태로 적용될 수 있으며 선박에 설치된 센서 장치 외에도 기지국 또는 기타 장소에 설치된 다른 센서 장치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을수 있다.
  - (나) 자동식별장치(AIS)로 수집된 정보 활용 시, '사용자 입력 방식에 의한 선박 정보의 불확실성', '전파 전달 범위 및 가시경로 관련 제약 사항', 'AIS 선박 정보의 업데이트 빈도' 등의 운용 한계가 고려되어야 한다.
- (3) 센서는 운용 환경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.
- (4) 시스템 주도로 실행(Action)이 이루어지는 자율수준3(AL3) 이상의 선박 내 해상 물체/선박 감지 센서는 가시거리 감소와 같은 작동 범위의 모든 한계를 감지 할 수 있어야 한다.
- (5) 선박 운항/운동 데이터는 선박의 운동정보 및 위치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.
- (6) 해양 환경 데이터 통합/분석 모듈 및(또는) 선박 운항/운동 데이터 통합/분석 모듈이 있는 경우 해당 운용 한계에 근접하면 운영자에게 경고 알림이 제공되어야 한다. 비상제어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경우 운용 한계 초과 시 사전

2장 선급검사 2 장

정의된 안전절차가 실행될 수 있도록 해당 정보를 자율운항시스템에 전달하여야 한다.

(가) 시스템이 의사결정 및 실행하는 자율수준4(AL4) 이상의 선박으로서 시스템 고장에 따른 정비 작업을 수행할 선 원이 승선하지 않는 경우, 주 기관, 보조 기관 및 축계에서 작동 상태 및 건전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 할 수 있어야 하며 하나 이상의 CCTV 시스템이 시각적 모니터링을 제공하여야 한다. 수집 및 분석된 결과는 선외지원시스템 운영자가 확인하기 적합한 형식으로 전송, 기록 및 문서화되어야 한다.

(7) 경제운항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선박은 자체 센서로부터 해양환경 데이터를 독립적으로 수집해야 한다. 풍속, 파주 기(wave frequencies)와 같은 누적 데이터는 선외 지원 시스템에 제공되어 추후 경제 운항 지원 시 사용될 수 있 다.

#### 2. 자율운항시스템

- (1) 자율운항시스템은 선외지원시스템에 내장된 소프트웨어 및/또는 선외지원시스템의 명령에 따라 적절하게 선박 및 장비를 제어해야 한다.
- (2) 운영자는 언제든 자율운항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.
- (3) 항해계획은 경유 지점(waypoints), 선회각도 및 안전속도를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하며 운영자가 언제든 새롭게 정 의하고 갱신할 수 있어야 한다.
- (4) 항적제어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경우 선박이 계획된 항로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를 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해 당 편차가 정해진 한계를 벗어나게 되면 경보를 보내야 한다. 편차의 허용오차는 운영자에 대한 정보 과부하 위험 을 피하기 위해 항해 상황(외해(open sea) 항해 여부, 해상 교통량 등)에 따라 설정되어야 한다.
- (5) 모든 운용 시나리오에 대한 운항 인자(항해 속도 등)는 각 자율화시스템의 운용 범위를 고려하여 설정되어야 한다.
- (6) 항만 내 운항 및 접/이안에 대하여 완전한 자율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상황에서 선내 운영자 또는 선외 지원 시스템 내 운영자에게 제어권이 이양될 수 있어야 한다.
- (7) 해사 규정에 따른 충돌회피 모듈이 갖추어진 자율운항시스템에는 본선 주변에 식별된 모든 선박에 대하여 기존 선박 들이 준용하고 있는 운항 규정(COLREG 등)과 적절한 선박 조종술에 기반을 둔 자동회피 기술이 적용되어야 한다.
- (8) 황천 시 시스템에 의한 안전한 선박 기동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경제운항시스템 및 항적제어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경우 극한의 환경을 회피하도록 항해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.
- (9) 긴급 충돌회피 모듈을 갖추고 있는 선박은 근거리 충돌 상황이 확인된 경우 적절한 회피 기동을 하여야 한다. 해당 회피 기동은 다음의 절차를 따를 수 있다.

(가) 감속

- (나) 장애물의 움직임 예측 및 예상
- (다) 초기 선박 경로에서 벗어남
- (10) 시스템이 의사결정 및 실행하는 자율수준4(AL4) 이상의 선박에서 충돌 회피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없을 경우, 사전 정의된 안전절차가 실행되어야 한다.
- (11) 경제우항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선박은 다음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.
  - (가) 선박에 의해 수집된 기상 데이터를 수신된 일기 예보와 비교하여 평가
  - (나) 상기 데이터 조합을 통해 선박의 항해 계획에 따른 현재 및 미래 기상 조건 추정
  - (다) 추정된 기상 조건과 선박의 안정성 및 기동성을 고려하여 경로 최적화 기준에 따라 경로 최적화 수행
- (12) 비상제어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선박은 잠재적으로 선박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을 신뢰성 있는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.
  - (가) 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비정상 상태가 식별되면 사전에 정의된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안전한 상황으로 복구하거 나 적어도 피해를 완화하는 수단을 자동으로 활성화 할 수 있어야 한다. 여기서 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비정상 상태란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시스템을 통해 분석된 결과(해양 환경, 본선의 운항/운동 상태) 정상운항이 불가능 한 환경에 있거나 본선의 운항/운동 상태가 비정상적이라고 판단된 경우 또는 기타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운 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시스템 오류가 감지된 경우를 의미한다.
- (13) 시스템이 의사결정 및 실행하는 자율수준4(AL4) 이상의 선박으로서 시스템 고장에 따른 정비 작업을 수행할 선원 이 승선하지 않는 경우, 시스템은 오류에 대한 복원성을 갖도록 설계되어야 한다.
- (14) 시스템이 의사결정 및 실행하는 자율수준4(AL4) 이상의 선박으로서 운영자가 승선하지 않는 경우 선박과 선외 지 원시스템 간 연결이 사전 정의된 시간을 초과하여 끊어지면 사전 정의된 안전절차가 실행되어야 한다. 해당 안전 절차는 다음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.
  - (가) 운영자의 수동 제어 시도
  - (나) 다음 경유 지점으로 천천히 운항

- (다) 현 위치 유지
- (라) 이전 경유 지점으로 운항

#### 3. 통신시스템

- (1) 통신 회선은 자율운항선박과 자율화시스템을 안전하게 제어할 수 있는 적절한 범위와 대역폭, 신뢰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하며 데이터 품질은 정상 조건 및 예측 가능한 비정상 조건에서 요구되는 자율수준 및 기능에 적합해야 한다.
  - (가) 정상 조건 및 예측 가능한 비정상 조건에서 요구되는 통신 네트워크 용량, 신뢰성, 가용성, 유지보수성, 안전성 및 보안성능이 고려되어야 한다.
  - (나) 통신 네트워크 성능은 무선 데이터 통신, 개인 데이터 통신 및 활용되는 공용 데이터 통신의 가변성 및 취약성을 고려하여야 한다.
  - (다) 통신 네트워크 구조는 간섭, 성능저하 및 장애에 대하여 충분한 복원성을 제공하여야 한다.
  - (라) 선외지원시스템과 선박 간(또는 다수의 선박 간)의 통신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한 데이터 관리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데이터 링크를 적절히 인코딩 및 암호화하여 간섭을 방지하여야 한다.
  - (마) 외부 통신에 대하여 장애가 발생할 경우 중요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백업 절차가 실행되어야 한다. 장애 발생 시 주 통신 경로와 백업 경로 간 자동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대한 경고 알림이 운영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. 주 경로와 백업 경로로써 각각 독립적인 통신시스템이 사용되어야 한다. 다만, 통신시스템에 단일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자율운항선박과 자율화시스템을 안전하게 제어할 수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 한다.(예; AL1 또는 AL2 선박) (2022)
  - (바) 순환 중복 검사(Cyclic redundancy check) 또는 이와 동등한 수용 가능한 방법을 적용하여 데이터의 전송 완료를 확인하기 위한 전송 제어 수단이 설계되고 제공되어야 한다. 손상된 데이터가 감지되면 허용 가능한 전체 응답 시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시도 횟수를 제한해야 한다.
- (2)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통신 네트워크 성능 요건 및 데이터 품질 요건이 운용계획서 상에 정의되어야 한다.
- (3) 원격 제어 시 선외 운영자는 제어 행위와 실제 선박 반응 간 지연을 야기하는 통신대기 시간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. 대기 시간은 운용 중 지속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대기 시간이 미리 정의된 한계를 초과할 경우 운영자에게 경고를 주어야 한다.
  - (가) 제어 피드백 루프 사이클이 완전히 처리되기 전에 새로운 명령을 내리는 경우 개체 간 제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통신 프로토콜을 설계하고 운영자에게 제어 루프 피드백 시간에 대한 정보와 적절한 시스템 반응을 감안한 명령 간 최단 인터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
- (4) 선외지원시스템에 주기적으로 제공되는 데이터 유형과 전송 간격 및 양은 제어 모드 변경 시(예: 자율운항 → 원격 제어) 그에 적합하게 변경되어야 한다. 필요한 경우, 항만 등 연안 해역에서 교통량이 많은 상황에서는 육상 기반 통신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최대한의 가용성과 최소 대기 시간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.
- (5) 모든 데이터는 우선순위로 식별되어야 하며 전송 소프트웨어는 데이터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.
  - (가) 기동, 제어, 비상 신호 또는 안전 기능을 제공하는 시스템에 대한 경고는 시스템의 모든 작동 모드에서 다른 데이터보다 우선해야하며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.
- (6) 무선 데이터 통신 링크에 의존하는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작동해야하는 기능에는 수용 가능한 시간 내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있어야 한다.
- (7) 네트워크는 링크 자체의 장애를 감지하고 링크에 연결된 노드에서 데이터 통신 장애를 감지해야한다. 통신 장애 감지 시 적절한 경고 알림이 제공되어야 한다.
  - (가) 시스템이 의사결정 및 실행하는 자율수준4(AL4) 이상의 선박으로서 운영자가 승선하지 않는 경우 통신 회선에 예상치 못한 치명적 손실 또는 장애가 발생하면, 사전 정의된 안전절차가 실행되어야 한다.
- (8) 통신 회선으로부터 방출되는 전파가 타 시스템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되며 타 시스템으로부터 방출되는 전파 또한 통신 회선의 성능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.
- (9) 통신시스템은 권한이 부여된 인원만 접속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.
- (10) 전송 프로토콜은 인정된 국제 표준에 따라야한다. 위성 통신 공급자는 국제 해사 위성기구(IMSO)에 의해 인정되어야 한다.
- (11) 통신 네트워크 및 시스템은 다음의 국제 표준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.
  - (가) IEC 61850-90-4, Network engineering
  - (4) IEC 61162, Maritime navigation and radiocommunication equipment and systems Digital interfaces
  - (다) IMO MSC.252(83), Performance Standards for Integrated Navigation Systems (INS)

#### 4. 선외 지원 시스템

(1) 자율운항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효율적 기능을 위해 선외 운영자에게 데이터 수집 및 분석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

- (2) 시스템이 의사결정 및 실행하는 자율수준4(AL4) 이상의 선박으로서 운영자가 승선하지 않는 경우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.
  - (가) 운용 중 발생 가능한 위험 상황에 대하여 자율운항선박을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.
  - (나) 우영자가 자윸유항선박의 임무를 재 프로그래밍하고 언제든 직접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.
  - (다) 본선 및 자율운항선박 운항에 참여하는 기타 의사 결정 주체(예, VTS, 항만당국, 해운사 등)와의 통신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.
  - (라) 무선 통신 또는 영상 신호를 이용하여 타 선박으로부터의 요청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.
- (3) 다수의 운영자 간 제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제어권 양도 절차를 수립하고 원칙적으로 동시에 둘 이상의 제어권이 행사되지 않도록 한다.
- (4) 시스템 고장 시 운영자에게 청각 및 시각적 경보가 제공되어야 하며, 자율/원격 제어 하에서 설비에 대하여 제시되는 경고는 선원 및 선외 운영자에게 요구되는 대응 유형에 따라서 명확하게 구별 가능하고 범주화되어야 한다.
- (5) 운항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선외 운영자는 지원 대상 선종에 대한 적합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최소한 선원과 동등한 정보수준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.
- (6) 제어시스템은 인적 요소를 반영하여 설계되어야 한다. 통제 장치는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, 그 기능, 조작 방법 및 중요도를 반영하여 논리적인 방식으로 배열되어야 한다. 선외 지원 시스템 설계 시 다음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.
  - (가) 운영자가 안전하게 제어할 수 있는 적절한 수의 자율운항선박
  - (나) 자율운항선박과의 제어 연결을 유지하고 제어 연결이 끊어지거나 손상된 경우 안전한 운용을 유지하면서 이를 적절히 통보하는 기능
  - (다) 통신 손실 및 복구 기능
  - (라) 데이터 로그 기능
  - (마) 로그인 및 비밀번호 인증, 기계 또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기능
  - (바) 제 3자가 자율운항선박을 무단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자동안전장치 기능

#### 203. 기타 요건

- 1. 자율화시스템은 자격과 경험을 갖춘 적절한 수의 직원에 의해 안전하게 운용되어야 한다.
- (1) 자율운항선박을 배치, 운용, 회수하거나 예측 가능한 위급 상황에서 관련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운용 팀의 구성과 규모가 정해져야 한다.
- (2) 안전과 기술적 문제를 포함한 전 운용 시나리오에 대하여 요구되는 교육훈련 이수 여부와 적합한 수준의 자격, 숙련도, 경험 및 건강 상태가 확인되어야 한다.
- (3) 시스템 운영자는 동급의 통제 선박에 대하여 충분한 운항 또는 서비스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.
- (4) 팀 인원 간 직/간접적인 통신 수단이 고려되어야 한다.
- (5) 대상 자율운항선박 제어 및 운용, 유지관리를 위한 지침이 운영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.
- 2. 자율운항선박 유지보수 시 구조 및 설치 장비/시스템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조적 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.
- 3. 시스템이 의사결정 및 실행하는 자율수준4(AL4) 이상의 선박으로서 시스템 고장에 따른 정비 작업을 수행할 선원이 승선하지 않는 경우, 예방적 유지관리 체계가 도입되어야 한다.
- (1) 기계의 상태 평가 결과에 따라 시스템이 고장방지를 위한 시정 조치를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.
- (2) 사전 주문 가능한 예비 부품 소요를 시스템이 파악하고 해당 정보를 선외 운영자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.

## 제 3 절 자율운항선박 승인 절차

#### 301. 일반사항 (2021)

1. 자율운항선박의 일반적인 승인 절차는 그림 2.8과 같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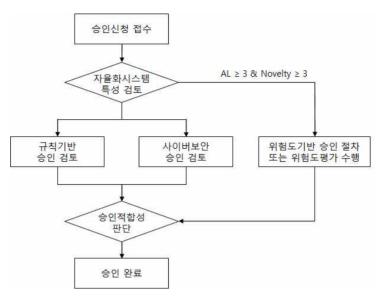


그림 2.8 자율운항선박의 일반적인 승인 절차 (2023)

- 2. 선내 운영자에 의해 의사결정 및 실행을 수행하는 자율수준 AL1 또는 AL2 선박의 경우에는 기존의 선급승인 절차에 따른다.
- 3. 의사결정 및 실행이 시스템에 의해 수행되는 자율수준 AL3 이상의 선박과 같이 선급기술규칙 적용이 어려운 신개념 설계에 대해서는 위험도기반 선박설계 승인 절차 또는 위험도평가를 인정할 수 있다. (2023)

#### 4. 일반적인 승인 절차

- (1) 자율화시스템 특성 검토
  - (가) 대상 선박에 탑재되는 자율화시스템의 설계 자료는 승인용으로 제출되어야 한다.
  - (나) 제출된 설계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 선박의 자율화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식별한다.
  - (다) 자율화시스템에 해당하는 신청된 자율수준(AL)의 적정성을 검토한다.
  - (라) 자율수준 AL3 이상의 경우, 식별된 자율화시스템에 해당하는 **위험도기반 선박설계 승인지침 표3.1**의 혁신성 (Novelty) 수준을 식별한다.
- (2) 자율화시스템 적용 규칙 식별

대상 선박의 자율화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규칙을 식별한다.

- (3) 자율화시스템 승인 검토 수행
  - (가) 식별된 규칙에 따라 대상 선박 자율화시스템에 대한 승인 적합성을 검토한다.
  - (나) 대상 선박 자율화시스템에 대한 사이버보안 승인을 검토한다.
  - (다) 자율수준 AL3 이상이고 혁신성 수준이 3 이상인 경우, 대상 선박의 자율화시스템에 대하여 위험도 기반 승인 절차 또는 위험도평가를 수행한다. (2023)
- (4) 자율화시스템 승인 결정

각 분야별 승인 검토 결과,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율화시스템의 승인을 완료한다.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승인을 거부하고 설계 보완을 요청한다.

#### 302. 관련 시험

자율화 시스템 및 자율운항선박에 대하여 요구되는 시험은 대상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절차서에 따른다.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시험이 요구될 수 있으며, 시험 결과의 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반복 시험이 요구될 수 있다.

- 1. 소프트웨어 시험 자율화시스템을 구성하는 소프트웨어는 우리선급이 인정하는 기준에 따라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해당 시험 절차와 유지관리 절차는 기본설계 및 상세설계에 대한 위험도 평가 시 검토되어 대상 선박에 대한 검사요 건 및 안전관리절차서에 포함되어야 한다.
- (1) 소프트웨어 제조자가 정의하고 승인작업반에서 합의한 절차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 작업이 수행되었음이 확인되어 야 한다.
- (2) 응용 소프트웨어의 소프트웨어 모듈은 개별적으로 시험되어야하고 이후 통합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.
- 2. 자율화시스템의 완성 시험 여러 기기로 구성되는 자율화시스템은 구성 완료 후 통합 시험을 수행하여 작동의 유효 성을 확인하여야 한다. 예를 들어, 여러 가지 센서로 통합 구성되는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시스템의 경우 각 센서에 대한 개별시험 뿐 아니라 통합 시스템에 대한 완성시험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시스템이 적합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하여 야 한다.
- (1) 시스템, 장비 및 구성품 통합에 대한 역할과 책임, 통합 절차, 검증 수행 시점이 안전관리절차서에 정의되어야 한다.
- 3. 선내 시험 선내 설치 후 가능한 한 실제에 가까운 상태로 유효하게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하며, 시스템 고장 또는 위험 상황 발생 시 미리 정의된 안전 시스템이 유효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.
- 4. 자율화시스템 상호 연동 시험 선내 설치된 자율화시스템 간 상호 연동 시험을 통해 시스템 간 데이터 전달과 기능 수행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. 이 시험은 해상 시운전에 포함될 수 있다.
- 5. 해상 시운전 해상 시운전을 통해 해당 자율운항선박에 대하여 운용계획서에 제시된 운용 범위와 위험 상황에서 시스템이 유효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. **①**

## 제 3 장 위험도기반 승인

## 제 1 절 일반사항

#### 101. 위험도기반 승인의 개요

- 1. 경험적 지식을 주 기반으로 하는 규범적 규정은 전례가 없는 신개념 설계에 적용하기 어렵고, 때로는 실행 가능한 혁 신적인 신개념 설계를 제한할 수 있다.
- 2. 신개념 설계는 예측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제출 및 승인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고, 그 방법으로써 최신의 위험도 평가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. 위험도기반 설계를 검토하고 승인하는 것을 위험도기반 승인이라 한다.
- 3. 규범적 규정은 특정 구성요소, 특정 시스템 또는 선박 전체의 기능에 대하여 각각의 요건들을 규정하고 있다. 위험도 기반 설계는 이러한 요건의 전부나 일부를 벗어날 수 있고 그 벗어나는 정도에 따라서 위험도기반 승인의 수준은 달라질 수 있다.
- 4. 위험도기반 설계의 승인방법 중 하나는 위험도기반 설계의 안전성을 기존 설계의 안전성과 비교하여 동등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.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필수적인 선박 기능에 대하여 기능적 요구조건 및 성능기준을 작성하여야하고 위험도기반 설계는 이를 만족하여야 한다. 위험도기반 승인의 다른 방법은 위험도기반 설계에 대하여 위험도 해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전반적인 위험도 평가기준과 비교하는 것이다.
- 5. 위험도기반 승인절차에서는 제출된 설계내용을 바탕으로 위험도 관점에서 승인기준이 정의되고 이에 따라 설계 분석 및 결과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. 따라서 위험도기반 승인절차에서는 대상 설계의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승인기준을 새롭게 정의하여야 한다.
- 6. 위험도기반 승인의 관련 규정은 위험도기반 선박설계 승인지침의 각 해당 요건에 따른다.

#### 102. 적용

- 1. 위험도기반 선박설계 승인지침의 적용을 받는 선박의 설계는 다음과 같다.
- (1) 기존의 규정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신개념 및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적용하고자 하는 선박 및 선박시스템의 석계
- (2) 기존의 규정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새로운 대안을 적용하고자 하는 설계
- 2. 위험도기반 선박설계 승인지침에서 규정하는 위험도기반 접근법과 위험도기반 승인절차는 선박설계에 관련되는 모든 분야에 적용가능하며 특정한 기술적, 규정적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다.
- 3. 위험도기반 승인절차는 설계부터 건조, 운항, 폐선에 이르는 전 생애주기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도를 고려하여야 한다.
- 4. 위험도기반 선박설계 승인지침의 적용에 있어서 위험도를 낮추기 위하여 필요한 설계상의 조치를 운전 및 절차상의 조치로 대신하여서는 아니 되며 설계상의 조치가 운전 및 절차상의 조치보다 우선되어야 한다.
- 5. 위험도기반 선박설계 승인지침의 성공적인 적용을 위하여 모든 관련 당사자는 설계의 착수부터 최종승인까지 지속적으로 상호 의견을 교환하여야 한다.

쓰 자율운항선박 지침 2023

21

## 제 2 절 위험도기반 설계 승인 시 고려사항

#### 201. 일반사항 (2020)

선박 내부 시스템의 고장 및 손상, 외부의 갑작스런 환경 변화나 자연 재해 등으로 인한 자율운항선박의 비상 상황과 관련된 위험은 아래와 같다.

- (1) 화물의 이동/액화/방출 등
- (2) 화재 및 폭발
- (3) 침수/침몰
- (4) 충돌
- (5) 정전
- (6) 악천후
- (7) 나쁜 시정
- (8) 복잡한 해상 환경
- (9) 대상 미식별
- (10) 해양 오염
- (11) 위험물 유출

#### 202. 위험도기반 설계 승인 시 고려사항 (2020)

위험도 평가는 비정상적인(undesirable) 사건이나 사고에 잠재적으로 기인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위험 요인을 다루어야한다. 자율운항선박의 기능적인 측면을 고려한 일반적인 위험 요인이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.

#### 1. 보안

보안과 관련된 사이버 공격 또는 외부로부터의 물리적인 침입에 대한 위험은 아래와 같다.

- (1) 사이버 공격
  - (가) 악성코드를 포함한 허가되지 않은 소프트웨어 설치
  - (나) 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 무단 수정
- (2) 물리적인 침입
  - (가) 선외로부터의 무단 침입
  - (나) 선내 시스템에 접근하는 승객

#### 2. 통신

자율운항선박의 시스템과 선외지원시스템, GPS 또는 인공위성 등과 더불어 자율운항선박과 다른 자율운항선박 또는 일반 선박 간의 통신과 관련된 위험은 아래와 같다.

- (1) 선외지원시스템과의 연결 실패
- (2) GPS, 인공위성 등과의 연결 실패
- (3) 선박 간의 연결 실패
- (4) 통신 품질 저하
- (5) 데이터
  - (가) 무선 통신 데이터 손실
  - (나) 데이터 전송 주기
  - (다) 통신 정보 오류

#### 3. 선체 구조 안전성

부유체로서의 선체 구조 안전성과 관련된 위험은 아래와 같다.

- (1) 배수
  - (가) 해치커버를 통한 해수 유입
  - (나) 빌지웰의 쓰레기로 인한 수위계 작동 불량
  - (다) 빌지경보에 대한 선원 부주의
  - (라) 화물창 쓰레기로 인한 빌지웰 막힘
  - (마) 선박범용펌프 또는 빌지펌프 고장
  - (바) 빌지웰 흡입밸브 고장
  - (사) 경보 및 감시시스템(AMS) 고장

- (2) 무게배분
  - (가) 선원 부주의 또는 실수
  - (나) 연료유 수위 측정 시스템 고장
  - (다) 적하지침기기 고장
  - (라) 평형수 시스템 고장

#### 4. 화물

자율운항선박의 화물과 관련된 위험은 아래와 같다.

- (1) 화물 저장
  - (가) 냉동컨테이너용 전원 공급 실패(변압기 고장, 전원 소켓과 플러그 분리, 전원 소켓과 플러그 파손)
  - (나) 냉동컨테이너 제어기 또는 냉동기 고장
- (2) 화물 안전
  - (가) 가연성/폭발성 화물의 누출
  - (나) 독성 화물의 누출
  - (다) 화물창 침수

#### 5. 시스템

자율운항선박의 시스템과 관련된 위험은 아래와 같다.

- (1) 추진시스템
  - (가) 추진력 생성 및 제어
    - (a) BMS 고장
    - (b) ECS 고장
    - (c) ECU 고장
    - (d) 엔진 내부상태 계측 센서 고장
    - (e) 엔진 내부 부품 고장
    - (f) 엔진 과도 진동
    - (g) 기관실 내 화재 발생
  - (나) 추진력 전달
    - (a) 추진축 파손
    - (b) 추진축 베어링 파손
    - (c) 스턴튜브 실링 파손
  - (다) 추진용 보기
    - (a) 연료유 공급시스템 고장
    - (b) 엔진 냉각시스템 고장
    - (c) 엔진 윤활시스템 고장
    - (d) 공기 공급시스템 고장
    - (e) 보일러 고장
    - (f) 과급기 고장
    - (g) 스크러버 또는 SCR 고장
    - (h) 기관실 내 화재 발생
- (2) 조타시스템
  - (가) 조타력 생성
    - (a) 타 손상 또는 변형
  - (나) 조타각 조절
    - (a) 조타용 유압시스템 유압펌프 고장
    - (b) 솔레노이드 밸브 조장에 의한 유압 잠금(밸브조절형 조타 유압시스템의 경우)
    - (c) 토크전동기 고장에 의한 유압 잠금(토크전동기형 조타 유압시스템의 경우)
    - (d) 유압오일 누출
    - (e) 조타 제어 시스템 고장
    - (f) 조타 제어 시스템 관련 케이블 손상
    - (g) 오토파일럿 내부 HCS 모듈 고장

- (h) 조타 제어 시스템 및 유압펌프 등으로의 전력 공급 이상
- (다) 조타각 감시
  - (a) Repeat back unit 고장
  - (b) 조타각 표시장치 고장
- (3) 전력시스템
  - (가) 발전
    - (a) 발전기 고장
    - (b) 발전기 제어기 고장
    - (c) ICMS 고장 (전원공급 실패)
    - (d) 발전기 회전수 측정센서 고장
  - (나) 배전
    - (a) 주배전반 사고(단락, 누전 등)
    - (b) 주배전반 부품 고장
    - (c) 주배전반 누수
    - (d) 분전반 고장
    - (e) 전력관리시스템(PMS) 고장
    - (f) 케이블 피복 손상
  - (다) 전력저장
    - (a) 배터리 성능 저하
    - (b) 배터리관리시스템(BMS) 고장
    - (c) 배터리 과충전
    - (d) ICMS의 UPS 시스템 고장
- (4) 자율운항시스템
  - (가) IT시스템의 고장
  - (나) 센서 고장
  - (다) 엑추에이터 고장
  - (라) 시스템 네트워크 고장
  - (마) 시스템 업데이트 실패
  - (바) 운영자와 시스템간의 인터페이스
    - (a) 운영자 실수
  - (사) 시스템 통합
    - (a) 하위시스템 및 구성품 간의 인터페이스
    - (b) 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 무단 수정
  - (아) 제어 혼선
    - (a) 예상치 못한 원격 작동 활성화
  - (자) 전자파 간섭
  - (차) 위험 장비
  - (카) 정비

#### 6. 선외지원시스템

선외지원시스템과 관련된 위험은 아래와 같다.

- (1) 원격 제어/보수시 사람의 실수
- (2) 육상 직원의 자격 및 교육
- (3) 화재
- (4) 외부로부터의 침입
- (5) 사이버 공격

## 제 3 절 위험 저감을 위한 대책

#### 301. 위험 저감을 위한 대책 (2020)

자율운항선박의 위험 요인을 완화하거나 저감시킬 수 있는 대책이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.

#### 1. 보안

해상 사이버보안 시스템 지침의 해당 요건에 만족하여야 한다.

#### 2. 통신

- (1) 통신 링크(communication link)에 대한 이중화 또는 이와 동등한 수단이 고려되어야 한다.
- (2) 시스템은 GPS, 인공위성 등과 선박 간 통신 오류를 탐지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. 통신 에러가 탐지된 경우, 선박은 사전 정의된 알고리즘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.
- (3) 선외지원시스템의 운영자가 적절히 무선 채널(radio channel)을 감시하면서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타 선박 교신에 적절히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.
- (4) 데이터 관리 프로토콜에 대한 기준이 제공되어야 한다.

#### 3. 선체 구조 안전성

- (1) 해치 커버가 설치되는 경우 높이 신뢰할 만한 풍우밀 성능을 가지는 해치 커버가 설치되어야 한다.
- (2) 빌지웰에 부유식 타입이 아닌 신뢰성 높은 수위 계측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.
- (3) 화물창 바닥에 빌지웰이 설치되는 경우 화물창의 여러곳에 빌지웰이 설치되어야 한다.
- (4) 화물창이 침수되는 경우를 고려한 안전 항해 지침이 제공되어야 한다.
- (5) 벨지와 관련되는 알람 및 흡입밸브 상태 등에 대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저장되고 육상으로 전송되어야 한다.
- (6) 밸러스트수처리장치가 자동으로 운용될 수 있어야 한다.
- (7) 항해중에 연료유 소모에 따른 평형수 조정이 가능하도록 적하계산기가 설치되어야 한다.
- (8) 연료유 소모에 따른 선박 복원성 및 모멘트 변화 자동평가시스템이 제공되어야 하며 평가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저장이 되고 육상으로 송신이 가능하여야 한다.
- (9) 실시간 선체 구조 안정성 감시를 위해 HMS(Hull Monitoring System) 및 FMS(Fatigue Monitoring System)가 설치되어야 한다.
- (10) HMS 및 FMS에 신뢰성이 높은 센서가 설치되어야 한다.
- (11) 선체 구조안정성 평가시스템은 HMS 및 FMS 측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.
- (12) 선체 구조안정성 평가 결과 및 현재 운항정보를 기반으로 선박의 방향 및 속도가 결정되고 실행 명령을 발신하는 자율항해시스템이 설치되어야 한다.
- (13) HMS 및 FMS 측정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저장 및 육상으로 송신이 가능하여야 한다.
- (14) 안정적이고 끊김없는 무선 데이터 통신이 확보되어야 한다.
- (15) 데이터 송수신 관련하여 사이버보안이 확보되어야 한다.

#### 4. 화물

- (1) 화물의 온도 제어가 요구되는 경우 신뢰성 높은 원격 온도제어시스템 및 전원공급시스템이 설치되어야 한다.
- (2) 화물의 상태를 자동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설치되어야 한다.
- (3) 화물의 상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저장하고 육상으로 송신이 가능하여야 한다.
- (4) 유독성 화물이 적재된 화물창 진입 관련 안전매뉴얼이 제공되어야 한다.
- (5) 갑판상에 열화상 인식이 가능한 CCTV가 설치되어야 한다.
- (6) 화물창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(예, 통풍팬, 고정식 소화장치, 화재감지경보기, CCTV, 빌지시스템 등)는 선박 외부에서 원격으로 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.
- (7) 화물창 감시 데이터(예 : CCTV, 화재/연기 감지, 화물창 통풍팬 작동신호, 갑판 상태 등)는 실시간으로 저장되고 육상으로 송신이 가능하여야 한다.
- (8) 화재 및 폭발 사고에 대한 자동 평가 및 대응 시스템이 제공되어야 한다.
- (9) 안정적이고 끊김없는 무선 데이터 통신이 확보되어야 한다.
- (10) 데이터 송수신 관련하여 사이버보안이 확보되어야 한다.

#### 5. 시스템

- (1) 추진 및 보조 시스템
  - (가) 추진 및 보조시스템에 관련되는 장비가 이중화되거나 이와 동등한 수단이 고려되어야 한다.
  - (나) 독립적으로 측정된 2개의 개별 데이터를 사용하여 주기관의 성능이 비교 평가되어야 한다.

- (다) 육상에서 원격으로 추진 및 보조시스템을 비상정지할 수 있는 기능이 적용되어야 한다.
- (라) 주기관 및 보조시스템의 상태를 자동으로 진단하고 자가 복구 및 비상 대응이 가능하여야 한다.
- (마) 주기관 및 보조시스템의 운용 관련 계측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저장되고 육상으로 송신이 가능하여야 한다.
- (바) 입항시마다 주기관에 대해 자세한 검사가 실시되어야 한다.
- (사) 기관실에 대한 상시 감시, 정교한 안전성 평가 및 비상대응이 가능하여야 한다.
- (아) 기관실의 무인화를 고려하여 기관실 배치 설계 및 소화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한다.
- (자) 전기추진시스템의 적용이 고려될 수 있다.
- (차) 안정적이고 끊김없는 무선 데이터 통신이 확보되어야 한다.
- (카) 데이터 송수신 관련하여 사이버보안이 확보되어야 한다.

#### (2) 조타시스템

- (가) 조타제어시스템 고장 또는 고장 알람 발생시에 선박의 타가 중립 위치로 자동 복귀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어 야 하다
- (나) 조타시스템의 운용 데이터(예, 타각, 운용 신호, 타각 편차값 등) 및 상태 데이터가 저장되고 육상으로 전송이 가능하여야 한다.
- (다) 타, 오토파일럿 및 ECDIS가 이중화되거나 이와 동등한 수단이 고려되어야 한다.
- (라) 조타 제어시스템 및 유압시스템에 시스템에 대한 고장 탐지, 자체 진단 및 자동 복구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.
- (마) 조타시스템에 자동 충돌 회피 시스템이 탑재되어야 한다.
- (바) 조타실 내부에 조타각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CCTV가 설치되어야 한다.
- (사) 조타각 전송기(steering angle transmitter)는 고장 시 수리 또는 교체가 용이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.
- (아) 조타각 전송기가 이중화되어야 한다.
- (자) 조타각에 대한 적합성 평가 기능이 적용되어야 한다.
- (차) 안정적이고 끊김없는 무선 데이터 통신이 확보되어야 한다.
- (카) 데이터 송수신 관련하여 사이버보안이 확보되어야 한다.

#### (3) 전력시스템

- (가) 전력관리시스템에 대한 이중화 또는 이와 동등한 수단이 고려되어야 한다.
- (나) 비상발전기로 선박이 최소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고려되어야 한다.
- (다) 기관실 무인화를 고려하여 새로운 케이블 배치 설계가 고려되어야 한다.
- (라) 발전기 및 발전기 제어에 대한 운용 기록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저장되고 육상으로 전송이 가능하여야 한다.
- (마) 전력관리시스템에 대한 운용 기록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저장되고 육상으로 전송이 가능하여야 한다.
- (바) 주기관 시동시 배터리(또는 연료전지) 전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고려되어야 한다.
- (사) 전기추진시스템이 적용되는 경우 적절한 전력관리시스템 및 대용량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설계가 고려되어야 한다.
- (아) 전기추진시스템의 화재 및 폭발 위험도가 검토되어야 한다.
- (자) 전자기파 차폐 기능을 가지는 고신뢰성의 케이블이 사용되어야 한다.
- (차) 주요 케이블의 관통부에 대한 성능을 강화하고 관통부 개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케이블 배치 설계가 고려되어야 한다.
- (카) 버스바(Bus bar)에 트렁킹시스템(Trunking system)의 적용이 검토되어야 한다.
- (타) 배전 운용 데이터 및 주요 배전 장비(MSBD, 분전반, PMS)의 고장 기록이 실시간으로 저장되고 육상으로 전송 이 가능하여야 한다.
- (파) 안정적이고 끊김없는 무선 데이터 통신이 확보되어야 한다.
- (하) 데이터 송수신 관련하여 사이버보안이 확보되어야 한다.

#### (4) 자율운항시스템

- (가) 자율운항선박의 시스템에 대한 이중화 또는 이와 동등한 수단이 고려되어야 한다.
- (나) 시스템 고장 및 장비 고장 시 비상 절차 내용을 포함한 안전 운용 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. 시스템 운용 중 해당 시스템의 상태가 감시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(다) 자율운항선박 설계 시 운영자 업무 범위를 최소화하여야 한다. 운영자에게 요구되는 조치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화 정도가 반드시 정의되어야 한다. 운영자의 업무 범위가 정해지면, 운영자에게 의사 결정 및 조치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제공되어야 한다. 사전 정의된 자동화 및 운영자 피드백 수준에 대한 제어 기능 시뮬레이션이 설계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. 운영자에게 필수적인 운용 기술을 제공 및 유지토록 하

는 적합한 교육 과정이 개발되어야 한다.

(라) 제어 루프 피드백 시간에 대한 정보와 적절한 시스템 반응을 감안한 명령 간 최단 인터벌 정보가 고려되어야 한다.

- (마) 적절한 제어권 양도 절차를 수립하고 동시에 둘 이상의 제어권이 형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(바) 자기장에 대해 예상할 수 있는 강도 및 안전 수준을 규명하고 예상 강도의 수준에 따른 안전 지침이 수립되어 야 한다.
- (사) 상세한 위험도 분석과 설계 특성을 통해 장비와 관련된 위험이 통제될 수 있도록 안전 지침이 수립되어야 한다.
- (아) 운용, 정비, 수리 및 입고와 관련한 안전 지침이 수립되어야 한다.
- (자) 안정적이고 끊김없는 무선 데이터 통신이 확보되어야 한다.
- (차) 데이터 송수신 관련하여 사이버보안이 확보되어야 한다.

#### 6. 선외지원시스템

- (1) 육상 직원의 교육 계획 수립 및 자격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.
- (2) 예측 가능한 위험을 최소화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안전 지침이 수립되어야 한다. 🛈

**ႍ 자율운항선박 지침 2023** 

27

인 쇄 2023년 5월 30일 발 행 2023년 6월 2일

## 원격검사 지침

 발행인
 이
 형
 철

 발행처
 한
 국
 선
 급

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 9로 36

전화: 070-8799-7114 FAX: 070-8799-8999

Website: http://www.krs.co.kr

신고번호 : 제 2014-000001호 (93. 12. 01)

### Copyright© 2023, KR

이 규칙 및 적용지침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전재 및 재배포 시 법적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.